

감사결과 처분서(안)

부서명 : 학생성공과(학생지원팀)

연번	지 적 사 항	처분(안)																					
1	<p>교내장학금 지급 부적정</p> <p>○ 「교육기본법」 제28조에 따르면 국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,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, 「국립금오공과대학교 장학금 규정」 제4조에 따르면 징계 해제 만료 학기로부터 1개 학기가 지나지 않은 학생은 장학생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, 「국립금오공과대학교 장학금 지급 지침」 IV.장학금 종류 및 기준에 따르면 근로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1.6이상인 학생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,</p> <p>【징계해제 만료 미도래 학생 장학금 지급 관련】 ----- ①</p> <p>- 학생성공과 학생지원팀은 2022.08.31. 징계해제 만료 미도래 학생인 ○○○에게 KIT인재인증장학금 131,820원을 지급하면서 장학생의 자격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,</p> <p>【징계해제 만료 미도래 학생 장학금 부적정 지급 현황】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4">징계 처분 학생 내역</th> <th colspan="3">부정적 장학금 지급내역</th> </tr> <tr> <th>학부(과)</th> <th>성명</th> <th>처분내용</th> <th>처분 시작일</th> <th>장학금명</th> <th>지급일</th> <th>지급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</td> <td>○○○</td> <td>무기정학</td> <td>2022.08.11</td> <td>KIT인재인증 장학금</td> <td>2022.08.31</td> <td>131,82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징계 처분 학생 내역				부정적 장학금 지급내역			학부(과)	성명	처분내용	처분 시작일	장학금명	지급일	지급액	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	○○○	무기정학	2022.08.11	KIT인재인증 장학금	2022.08.31	131,820원	<p>○주의(2명) - 관련 : 연번 ②</p> <p>○시정(회수) - 관련 : 연번 ① -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내 장학금(KIT인재인증장학금) 131,820원을 당사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</p> <p>※ (양정사유) - 장학생 자격제한 확인은 실무적인 사안이며, 장학업무담당자의 규정 및 지침 미숙에 따른 사항으로 '주의' 및 '시정' 조치 필요 - 다만, 대학근로장학금은 근로 대가성을 인정하여 시정(회수)조치 불문</p>
징계 처분 학생 내역				부정적 장학금 지급내역																			
학부(과)	성명	처분내용	처분 시작일	장학금명	지급일	지급액																	
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	○○○	무기정학	2022.08.11	KIT인재인증 장학금	2022.08.31	131,820원																	

【직전학기 성적미달 학생 근로장학금 지급 관련】 ----- ②

- 학생성공과 학생지원팀은 「2022학년도 1학기 학기 중 근로장학생 운영계획」을 수립·운영하면서 직전학기 성적 70점/100점(평점 1.6) 미만 학생인 ○○○(대학근로(육체), 2021-2학기 학사경고)에게 3월 ~ 6월분 대학근로장학금 총 1,495,66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.

【직전학기 성적(평점1.6) 미달 학생 대학근로장학금 부적정 지급 현황】

직전학기 성적 미달 학생 내역				부정적 장학금 지급내역 (2022-1학기 근로)				
학과	성명	근로구분	직전학기성적	3월	4월	5월	6월	합계
전자공학부	○○○	대학근로(육체)	학사경고(2021-2학기)	281,960원	458,000원	377,850원	377,850원	1,495,660원

감사결과 처분서(안)

부서명 : 최고경영자과정, 국제교류교육원

연번	지 적 사 항	처분(안)
2	<p>근무지외 국내출장 여비(운임) 부적정 수령</p> <p>○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13조 별표2 및 「2022~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」Ⅳ.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에 따르면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(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)으로 하되, 다만 공무의 형편상 *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,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,</p> <p>* 「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」 제9장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, 라.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' 관련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○ 신칸요지,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</p> <p>○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·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</p> <p>○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</p> <p>○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</p> <p>○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</p> <p>○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공무원 등</p> </div> <p>- 국제교류교육원 공무원조교 ○○○는 2024.03.11. 자가용을 이용하여 세종시 출장을 수행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‘출장경로가 매우 복잡·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’의 사유로 연료비와 통행료 합계 51,800원을 수령하는 등</p> <p>【붙임】 “근무지외 국내출장 운임 부적정 수령 현황” 과 같이 2022년부터 2024년 감사일 현재까지 위 공무원 조교 ○○○ 등 직원 3명은 근무지외 국내출장을 수행한 후 “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” 아님에도 불구하고, 연료비와 통행료를 합산한 운임 총 4건을 청구하여 운임 합계 234,17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.</p>	<p>○ 시정(회수)</p> <p>- 부적정하게 지급된 운임총 234,170원 중 철도 또는 버스운임 정산 차액 합계 62,970원을 당사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</p> <p>(‘시정’ 처분대상자 명단 및 회수금액 : 별지와 같음)</p> <p>※ (양정사유) 「공무원 여비규정」 등 관련 규정 및 지침 해석 착오 따른 사항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운임에 대한 정산 차액 회수 ‘시정’ 조치 필요</p>

감사결과 처분서(안)

부서명 : 학생성공과(학생지원팀)

연번	지 적 사 항	처분(안)
3	<p>대구통학버스 운전원 성범죄 경력 확인 지연</p> <p>○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(최장 10년) 동안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,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는데도,</p> <p>- 학생성공과 학생지원팀은 2022.03.02. 대구통학버스 운영을 하면서 운전원 13명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·확인을 33일간 지연하는 등 【붙임】 “대구통학버스 임차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 지연 현황” 과 같이 2022년부터 2024년 감사일 현재까지 운전원 35명에 대하여 28일에서 40일간 성범죄 경력 조회·확인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.</p>	<p>○ 주의(2명) - 학생성공과</p> <p>※ (양정사유) 대구통학버스 운전원에 대한 사전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 부주의에 따른 사항으로 '주의' 조치 필요</p>

감사결과 처분서(안)

부서명 : 학생성공과(학생지원팀)

연번	지 적 사 항	처분(안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<p>도급계약 체결시 인지세 납부 여부 미확인</p> <p>○ 「인지세법」 제1조,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·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*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,</p> <p>* 「인지세법」 제3조 관련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(과세문서) 및 세액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과세문서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세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</td> <td>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: 2만원</td> </tr> <tr> <td>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: 4만원</td> </tr> <tr> <td>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: 7만원</td> </tr> <tr> <td>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 이하인 경우 : 15만원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: 35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- 학생성공과 학생지원팀은 2022.04.04. ‘2022 신입생 환영회 무대행사 용역’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 10,780,000원에 해당하는 인지세 20,000원을 확인하지 않는 등 아래 표와 같이 2022년부터 2024년 감사일 현재까지 인지세 총 60,000원(3건)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인지세 납부 여부 미확인 현황】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%;">연번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계약명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계약상대자 (대표자)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계약일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계약금액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인지세 미확인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2.04.04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0,780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,00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3.03.08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0,750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,00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 <td>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4.03.11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0,800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,000원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합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6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문서	세액	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	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: 2만원	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: 4만원	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: 7만원	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 이하인 경우 : 15만원		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: 35만원	연번	계약명	계약상대자 (대표자)	계약일	계약금액	인지세 미확인액	1			2022.04.04	10,780,000원	20,000원	2			2023.03.08	10,750,000원	20,000원	3			2024.03.11	10,800,000원	20,000원	합 계					60,000원	<p>○ 시정(회수)</p> <p>- 미확인된 인지세액 총 60,000원을 계약 업체로부터 징구하고, 수입인지를 계약 문서에 첨부하시기 바람.</p> <p>※ (양정사유) 계약관련 서류 확인은 실무적인 사안이며, 계약담당자의 법령 및 지침 미숙에 따른 사항으로 미확인 인지세 징구 '시정' 조치 필요</p>
과세문서	세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	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: 2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: 4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: 7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 이하인 경우 : 15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: 35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번	계약명	계약상대자 (대표자)	계약일	계약금액	인지세 미확인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		2022.04.04	10,780,000원	2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		2023.03.08	10,750,000원	2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		2024.03.11	10,800,000원	2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 계					6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감사결과 처분서(안)

부서명 : 최고경영자과정

연번	지 적 사 항	처분(안)
5	<p>계약업무 처리 소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, 계약금액, 이행기간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, 계약서에는 담당공무원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, ○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, 제조,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, 설계서,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하고,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, <p>【계약서 분임재무관 직인 날인 누락 관련】 ----- 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원학사지원실 최고경영자과정팀은 2022.06.03. ‘33기 수학여행 버스 임차’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분임재무관 직인을 날인하지 않은 등 【붙임1】 “계약서 분임재무관 직인 날인 누락 현황 “과 같이 2022년부터 2024년 감사일 현재까지 총 10건의 계약서 작성시 분임재무관 직인 날인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2명) - 최고경영자과정 <p>※ (양정사유) 계약관련 서류 확인은 실무적인 사안이며, 계약담당자의 법령 및 지침 미숙에 따른 사항으로 ‘주의’ 조치 필요</p>

【용역감독 미실시 관련】 ----- ②

- 대학원학사지원실 최고경영자과정팀은 2023.03.30. ‘2023년 금오공과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모바일 임원수첩 유지보수’ 을 계약을 체결하면서, 용역 착수(2023.04.01.)전 용역감독자를 미선임하고, 용역완료(2024.02.29.)까지 용역감도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등 **【붙임2】** “용역 감독 미실시 현황” 과 같이 2022년부터 2024년 감사일 현재까지 총 2건의 용역 감독관 미선임 및 감독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.